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

I.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내용

1. 추진현황

- 부처협의 : '04. 6. 2
- 입법예고 : '04. 7. 26
- 규제심사 : '04. 9. 18
- 법제처심사 : '04. 10. 22
- 차관회의 : '04. 10. 28
- 국무회의 : '04. 11. 2
- 국회통과 : '05. 3. 2
- 법률공포 : '05. 3. 31

2. 개정 배경

불법 불량 전기용품 유통 근절



- 안전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규제 강화 추세
- 불법 불량 전기용품 유통 지속
-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

3. 주요 개정 내용

1)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제도 도입

- 수입판매업자가 수입물량에 대하여 모델별 안전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 면제
 - 전기용품안전인증은 국내·외 제조업자가 반드시 규정되어 외국 제조업자 또는 국내 수입판매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어 불법으로 수입되고 있음

2) 정기검사 의무화

- 연 1회 이상 전기용품제조업자에 대한 정기 검사 의무화
 - 현행 법률에서 정기검사는 인증기관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행 규칙에서는 의무화로 규정되어 법체계의 문제점 발생

3) 정기검사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

- 자체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 안전성이 우수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 - 전기용품의 안전성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등을 면제하여 불 필요한

규제완화

- 4) 시·도 위임사무를 이양사무로 전환
- 지방분권을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의 위임업무를 시·도지사에게 이양
 - 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개선·파기 또는 수거명령
 - ②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와 교환, 환불, 수리 등의 명령
 - ③ 보고·검사 또는 질문
 - ④ 과태료 부과·징수
 - * ③과 ④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사무로 규정
- 5) 처벌기준 강화
-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 -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 -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한 자
 -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고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한 자
 -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자
 -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
 -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 표시를 행한 자
 -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전기용품을 수입, 판매, 진열 또는 보관한 자
- 6)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설립

■ 불법전기용품 조사 등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

- 안전인증제도에 관한 연구·교육
- 안전기준의 발간·보급
- 불법전기용품의 조사
-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확인

7) 행정 처분기준 정비

■ 규정 위반시 취소

- 규정위반사안에 따라 행정 처분
 - 개선명령 : 경미한 사항 위반시
 - 6개월 이내의 안전인증 표시금지 : 개선명령 미 이행시 등
 - 안전인증취소 : 중대한 사항 위반시

II.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

■ 추진계획

- 부처협의 : '05. 4. 12
- 입법예고 : '05. 4. 25
- 규제심사 : '05. 5 월말
- 법제처심사 : '05. 6월
-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: '05. 6 월말
- 공포 : '05. 7 월초

- 1) 전기용품 파기·수거 명령 대상 확대(안 제2조 1항)
- 불법, 불량 전기 용품에 대한 개선·파기·수거 명령 대상 확대
 - 안전인증·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
 - * 종전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

■ 기술표준원 동정 ■

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개선·파기·수거 명령

2) 정기검사 면제대상(안 제1조의4 제2항)

- 정기검사(시 제품시험)결과 2회 이상 연속 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
- 정기검사 시 자체검사 결과 2회 이상 연속 하여 우수한 경우
- 시판품 조사결과 최근 2년 이내에 부적합이 없는 경우

3) 수수료조정(안 제1조의5)

- 안전인증서 발급
 - 60,000원→50,000원
- 안전인증의 변경
 - 10,000원→20,000원
- 안전검사
 - 안전검사서 : 20,000원
 - 시험수수료 : 안전인증과 동일

4) 시·도지사의 개선명령 대상(안 제2조 제1항 제2조)

- 시·도지사의 개선명령 대상은 유통중인 제품에 한함
 - 시·도지사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 개선명령하고, 그 기간내에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
 - ※ 안전인증기관의 개선명령 대상은 제조업체의 공장심사 부적합 또는 제품개선에 대한 개선명령

5) 시·도지사에게 교환·환불 등 명령 이양
(안 제3조)

- 산자부장관의 위임업무를 시·도지사에게 이양
 - 사실의 공표 및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교환·환불·수거 등의 명령을 시·도지사에게 이양

6) 안전검사를 받은 자의 보고사항(안 제4조)

- 법 제 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 받은 자는 산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보고 의무사항 규정
 - 안전검사 현황, 수입한 제품명, 모델명, 수입수량
 - 판매수량 및 판매처

7) 권한의 위임·위탁(안 제9조)

- 기술표준원장
 - 시판품조사, 과태료부과, 안전인증 면제확인고시, 자체검사 규정고시
- 시·도지사
 - 수출전용 면제확인
-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
 - 안전인증·안전검사 표시에 관한 보고·검사
 - 수출전용 이외의 안전인증면제 확인

III.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

■ 추진계획

- 부처협의 : '05. 4. 12

- 입법예고 : '05. 4. 25
 - 규제심사 : '05. 5 월말
 - 법제처심사 : '05. 6 월
 -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: '05. 6 월말
 - 공포 : '05. 7 월초
- 1) 안전인증대상품목 확대(안 제3조 제1항)
- 신개발품으로 안전성이 요구되는 제품(5품목)
 - 반신욕조, 발욕조, 음식물처리기, 무전극 램프, 무전극램프 안정기
 - 유통물량이 증가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제품(10품목)
 - 수은램프, 메탈램프, 나트륨램프, 빙수기, 전기칼갈이, 전기깡통따개, 전기칼, 커피 분쇄기, 프로젝터, 전기훈증살충기
 - 기준안전대상으로 품목명칭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품목(17품목)
 - 전기거치식그릴, 전기고기구이기, 와플기기, 핫플레이트, 크림거품기, 계란반죽기, 혼합기, 버터제조기, 압즙기, 슬라이스기, 달걀조리기, 우유가열기, 젖병가열기, 요쿠르트제조기, 증기조리기, 손건조기, 안면사우나기
 - 분야별 품목 중 통합 또는 분류가 필요한 품목
 - 전기소독기(11. 조명기기기)→7. 전기기기류 전기소독기
 - 직류전원장치(9. 직류전원장치, 10. 직류전원장치)→10. 직류전원장치
- 2) 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 고시(안 제3조 제2항)
- 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를 정하여 고시

(예) 공기청정기라 함은 필터가 있거나 전기적 또는 기계적 집진장치를 갖는 것에 한하며, 음이온 또는 오존에 의하여 공기를 청정하는 제품은 제외한다.
- 3) 안전인증 신청방법규정 명확화(안 제6조 및 제6조의2)
- 안전인증신청서 양식화
 - 안전인증신청제품 시료수 규정
 - 신청제품 1대 (전자파시험이 있는 경우 1대)
 - 신청 제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1대
 - 기타재료 또는 부품시험용 시료(안전기준 등에서 규정한 경우)
 - 안전인증 처리기한 규정
 -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
 - 제품특성상 제품시험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 연장가능
- 4) 공장심사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(안 제7조)
- ISO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춘자
 - 고교 졸업후 10년, 전문대 졸업후 7년, 학사학위 취득후 5년, 석사학위 취득후 3년,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의 실무경

■ 기술표준원 동정 ■

력이 있는자

5) 안전인증의 재시험(안 제7조의2)

- 최초 인증시 제품시험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선하여 다시 시험가능
 - 1회에 한하여 공장심사를 면제하고 재시험가능
- ※ 시험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

6) 안전인증의 변경(안 제8조제3항)

- 전기용품 제조업자가 그 사업을 전부 또는 분야별로 양수한 때에 한하여 안전인증 변경가능
 - 제조 및 검사설비와 함께 양수 받아야 하며 양수 받은 자는 안전인증기관에 신고

7)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확인 신청(안 제9조 제1항)

- 수출전용의 것 (시·도지사 → 시·도지사)
- 수출전용 이외의 것 (안전인증기관 → 협회)

8) 수입중고전기용품의 안전검사(안 제9조의 2)

-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불량별?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에 신청
 - 안전인증기관은 수입량에 대하여 확인 후 시료채취
- 안전검사합격을 받은 자는 각 제품마다 안전검사 필증부착

9) 정기검사 이외의 공장검사(안 제11조제1항)

- 유통중인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
- 안전성 결함으로 민원이 야기된 경우
-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

10) 안전인증 취소대상(안 제11조제1항)

- 안전인증 취소대상
 -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결함에 해당된 때
 -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 - 정기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때
 - 자체검사를 6월 이상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때(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제외)
 -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방법·절차를 위반한 때
 - 거짓으로 안전인증 등의 표시를 한 때
 -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기간 내에 개선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 - 3년 이내에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2회 이상 받은 때

11) 안전인증 개선명령대상(안 제11조 제2항 및 제3항)

- 안전인증 개선명령대상
 -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결함에 해당된 때
 - 공장심사결과 기준이 부적합한 때
 - 자체검사를 일부만 실시한 때
 -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때

-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때
※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월
 범위 내에서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
 조치

- ('04) 23품목 → ('05) 40품목
- 정기검사 강화
 - 철저한 정기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행
 정조치 강화

12) 자체검사(안 제12조)

- 자체검사 실시기록 3년 이상 보관

13) 안전인증표시방법(별첨7)

- 안전인증마크와 인접하여 안전인증 번호 및
 기술표준원장이 정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
 함
※ 종전에는 안전인증마크표시 밑에 필요한
 표시를 하여함

14) 안전인증관련서식 통일(별지)

- 안전인증·안전검사심청서(별지1), 안전인
 증서(별지4), 안전인증변경신청서(별지5),
 안전검사합격증(별지9)

IV. 전기용품안전관리 정책방향**■ 불량전기용품 유통강화**

- 불법·불량전기용품 유통방지를 위한 제
 도정비
 - 전기용품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확인대
 상물품 고시 개정
 - 안전인증 업체 정기심사 기준 고시 재
 정
 - 안전인증대상 세부지침 고시 재정
 - 시판품 조사 대상 품목 대폭 확대

■ 불법전기용품 단속 강화

- 불법수입 전기 용품 단속 강화
 - 관세청 통관자료 분석을 통한 불법제품
 단속 강화
※ 경찰청, 안전진흥원과 합동단속
 - 불법 사이버마켓 판매 단속
 - 불법전기용품 전문단속기관 지정
 -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(법정기관화)
 - 불법전기용품 신고센터 증설 및 활성화
 - 기술표준원, 3개 인증기관에 불법?불량
 신고센터 설치
 - 진흥원내 신고센터 활성화
 - 불법·불량 제조업체 현황을 대형마켓 및
 소비자 단체에 정보제공

■ 전기용품 분야 국제협력 활동강화

- FTA 체결 확대에 대비한 MRA 체결
 - 한·일, 한·싱 간 MRA
 - 국내의 민간인증기관 간 시험성적서 상
 호 MOU 체결확대
• 15개국 26개 기관 → 18개국 30개 기관
 - IECIE/CB인증범위확대
• 103개 규격 → 139개 규격
 - 한·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 개최
 - 국제회의 참가 활성화